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 안 번 호	370
------------	-----

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제 의 : 경기도의회 의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원 수 : 20명(더불어민주당 19, 자유한국당 1)

□ 선임위원 명단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정당	의원명	상임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제1교육위	성남7	더불어민주당	안기권	도시위	광주1
더불어민주당	최승원	건설위	고양8	더불어민주당	양철민	도시위	수원8
더불어민주당	권락용	도시위	성남6	더불어민주당	오지혜	경제위	비례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기획위	수원10	더불어민주당	유광혁	기획위	동두천1
더불어민주당	김우석	기획위	포천1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행정위	시흥4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건설위	하남1	더불어민주당	임채철	기획위	성남5
더불어민주당	김철환	농정위	김포3	더불어민주당	지석환	복지위	용인1
더불어민주당	박성훈	도시위	남양주4	더불어민주당	최세명	제2교육위	성남8
더불어민주당	박태희	복지위	양주1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제2교육위	수원4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기획위	고양3	자유한국당	이애형	복지위	비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각 대표의원은 총선거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 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고, 소속 의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교섭단체 외에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단체로 제한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내에 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0월 25일, 이동현 의원 등 36명
상정일자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14일 상정 및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12개월, - 위원수 : 20명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25일, 이동현 의원 등 36명
- 나. 회부일자 : 2018년 11월 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14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동현 의원)

가. 주 문

- 국가적·사회적 난제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 공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업률과 주거빈민율 등이 증가하고 있는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이유

- 청년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적·사회적 난제 중의 난제가 되었음. 고학력 졸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실업률은 미결혼 및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장래 내지 존립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임.
-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국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근 2년간(2017~ 2018년) 일자리 재정에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악의 고용쇼크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양적 지표의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 또한 청년들의 주거빈곤율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인 청년(25세~34세) 가구 비중이 20%에 이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결국 이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저소득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고 이마저도 젊은 층은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존재하는지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오늘날의 청년들은 고속 성장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 세대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동과 배움에 매달렸던 것과 달리 일자리의 질,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경험의 추구 및 공유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요즘 청년들의 이러한 인생관 및 가치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높은 실업률, 결혼 기피 현상, 1인 가구 비중 및 주거빈곤율의 증가 등은 상호 독립적이 아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당장의 실적을 위한 근시안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정책수혜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요구됨.
- 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일자리(취업·창업), 주거, 복지 등의 분야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전진석)-----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서류

-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별첨 2]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발의자 : 이동현 의원 등 36명
- 발의일 : 2018. 10. 25
- 회부일 : 2018. 11. 1.

2. 제안이유

-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거빈곤율 등의 청년 문제가 국가적·사회적 난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재정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오히려 역사상 유례없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청년 주거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은 저소득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실정인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관련 정책을 두루 살펴보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가적·사회적 난제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 공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업률과 주

거빈민율 등이 증가하고 있는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함.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함.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4. 검토의견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개요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 본 구성 결의안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 대한 복지 등 청년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진단을 통하여 청년 정책의 바람직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임.

□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의 타당성

- 청년 실업률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의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있음.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16년 15~24세와 15~29세의 경우 각각 27.2%, 42.3%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3.9%, 10.3% 낮은 수준임. 청년 실업률은 2012년~2016년 독일이 7.3%→6.1%, 일본은 7.0%→4.9%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7.5%→9.8%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¹⁾

- 2017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절반 이상(52%)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²⁾ 정부와 함께 경기도, 서울, 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청년 문제 해결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임.

<전국 및 시·도별 청년인구 비중(2017년 1월 기준)>

(단위: %)

행정구별	전국	경기도	서울	부산	경남	인천	대구	경북	충남	전북	전남	대전	광주	충북	강원	울산	제주	세종
비중	100	25.3	20.8	6.5	6.1	5.9	4.8	4.6	3.8	3.3	3.2	3.1	3.0	3.0	2.7	2.4	1.2	0.4

(출처: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 전국과 경기도의 2013년~2016년 청년층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 청년층의 실업률과 전국 청년층 실업률은 2016년에 9.8%로 동일해졌으나,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세~29세)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실업자	331	385	397	435
	실업률	8.0	9.0	9.2	9.8
경기도	실업자	75	89	103	113
	실업률	7.3	8.3	9.1	9.8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출처: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1) 김유빈, 청년고용의 현황 및 대응방안, 월간 노동리뷰, 2018년 3월호, p. 11~12 참조

2) 양정선 등,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년, p. 13~14 참조

-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하반기에 최악의 고용참사가 초래되었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국내유턴 시 보조금 지급 및 세제감면, 기업투자 촉진, 규제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국제 유가상승 등의 대외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어 지표 개선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
- 다음으로 주거 분야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 청년, 아동 세대를 비교하였을 때 최저주거 기준과 주거환경 수준은 아동 세대에 비하여 노인과 청년 세대가 다소 열악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거비 측면에서 청년 세대가 아동과 노인 세대보다 월등히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주거 빈곤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노인		청년		아동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시 설 미 달	부엌 미달	112,881	3.1	72,254	2.9	33,693	1.2
		화장실 미달	353,020	9.6	68,944	2.8	45,864	1.6
		목욕시설 미달	173,212	4.7	47,428	1.9	23,380	0.8
	면적 미달		105,443	2.9	189,084	7.6	201,740	7.1
	방수 미달		19,119	0.5	126,41	5.1	95,523	3.4
	최저주거 기준 미달		532,370	14.5	364,785	14.6	327,642	11.6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594,863	16.2	472,163	18.9	364,049	12.8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			409,483	11.2	505,492	20.3	177,633	6.3
전체 주거빈곤			732,343	20.0	722,900	29.0	419,260	14.8
전체			3,663,234	100.0	2,495,696	100.0	2,835,928	100.0

* 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청년은 가구주 연령이 20~35세 미만, 아동은 가구주 연령이 35~65세 미만인 가구임.

(출처 :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또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청년층의 경우 전세와 월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거빈곤가구에 한정하여 보면 청년층의 경우 주거안정성이 가장 낮은 월세 형태가 66.0%를 차지하고 있음.

<세대별 주거 형태>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			주거빈곤가구		
	노인	청년	아동	노인	청년	아동
자기 집	76.0	23.4	60.7	53.5	8.1	27.7
전세(월세 없음)	9.5	30.4	21.0	10.9	19.0	22.9
월세	11.6	37.4	15.3	31.2	66.0	43.9
무상	2.9	7.6	3.0	4.3	6.4	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청년은 가구주 연령이 20~35세 미만, 아동은 가구주 연령이 35~65세 미만인 가구임.

(출처 :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게다가 자가 소유나 전월세 거주를 불문하고 청년들 스스로 주거 자립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³⁾

-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미래 비전 전문가 포럼’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한 민간 전문가 그룹은 취업률, 결혼과 출산율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음. 청년층의 고용악화는 곧 주거빈곤 상황 및 결혼 지연 현상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재 비판의 십자포화에 직면에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세금을 투입하여 구직자·취업자에 수당·장려금 등 일정액을 지원하는데서 찾기보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망라하고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며

3) 정민우,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이메진, 2011년; 최은영, 박신영, 진남영, 강세진, 이봉조, 김기태, 등,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2014년 참고

국내뿐만 아니라 널리 해외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거 복지제도는 주로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청년 주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년 가구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경기도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바, 그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다수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주요 분야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는바(참고2),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총 점검하고 청년고용현황과 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혁,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에 대한 교육지원, 창업·귀농·해외진출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목적과 취지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5.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구성 결의안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임.
-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활동기간과 위원 수는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6.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관련

-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지 지원 업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8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4항 등에 따라 행정1부지사 소속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등, 동 규칙 제18조제9항, 제18조제11항, 제18조제15항 등에 따라 행정2부지사 소속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 창업지원과, 외교통상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속하는 사무를 소관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농정해양국에 속하는 사무를 소관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국에 속하는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실에 속하는 사무를 소관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전문위원실에서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경우 특별전문위원이,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

7.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본 안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제2항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한바,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4) 제11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참고 자료

1. 관계법령 발췌서
2.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지원 정책
 - 청년복지정책과
 - 주택정책과
 - 창업지원과
 - 농업정책과
 - 소상공인과
 - 외교통상과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1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의 정수는 21명 이내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청년 복지, 일자리 및 주거 지원 정책

청년복지정책과

1. 일하는 청년 통장(기존)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저소득 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6,191,000
건강 보험료	직장	52,565	89,641	115,568	141,300	168,404	195,224
	지역	26,650	92,445	129,883	161,163	189,593	217,535
	혼합	53,064	90,485	116,936	143,379	171,063	198,786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시 3년 후 약 1,000만원 수령
※ (본인저축액 10만원 + 근로장려금 17.2만원) X 3년 = 1,000만원
- (지원규모) 총15,500명 ※ 하반기 3,000명 모집인원 포함시 18,500명
- (소요예산) '18년 29,226백만원(지원금 27,776, 운영비 1,450)

□ 추진현황

- 모집인원 : 15,500명('16년 1,500명, '17년 9,000명, '18년 상반기 5,000명)
 - (경쟁률) 평균 6.8:1 (5기 15,500명 모집 105,312명 접수)
 - (유지율) 98.2%(총 15,500명 중 15,228명 유지)

2. 일하는 청년시리즈(기존)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 총사업비 : 112,153백만원(도비) 2018. 1월 ~12월
 -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34,500백만원), 일하는 청년 연금(17,100백만원),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57,000백만원),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3,553백만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자산 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18~34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42,788명
- (수행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공기관대행사업)

□ 추진현황

- (청년연금) 4,532명 선발(1차 3,000명, 2차 1,532명) / 4,784백만원 지원
- (청년마이스터통장) 9,908명 선발(1차 4,419명, 2차 5,489명) / 10,814백만원 지원
- (청년복지포인트) 11,633명 선발(월별 상시모집) / 2,424백만원 지원

3. 청년 구직지원금(기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도내 만18~34세, 중위소득 기준(150%)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내용) 청년구직지원금(총 300만원,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 ※ 체크카드(청바G) 발급 //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 매주 분기별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통해 구직활동 확인
- (2018년 예산) 80억원(도비)
- (수행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 추진현황

- 2018년 모집인원 : 2,300명(17,741명 신청, 경쟁률 7.7:1 기록)
 - 지원금액 : 4,659백만원

4. 민선7기 청년관련 공약 사항

□ 경기도 청년배당(공약/신규)

- (목적)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 (대상) 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 (재원) '19년 1,753억(도비, 시군비 매칭) ※ 시군 재정 협의 중
- (지원기간) 1년
- (내용) 1인당 연 100만원 지원

□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공약/신규)

- (목적) 청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미래 설계 기반 마련
- (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
- (재원) '19년 149억(도비)
- (지원내용) 국민연금보험료 1회분(90천원/2019년 기준) 지원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공약/신규)

- (목적) 군입대 청년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 확보로 활기찬 병영생활 도모
- (대상)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군복무 중인 자
- (재원) '18년 2.7억(도비) ※ '19년 31.5억(도비)
- (지원내용)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후유·장해 등 보험 지원(1인당 41천원)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공약/신규)

- (목적) 미취업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면접활동 비용 지원
- (대상) 도내 거주 만18세-34세 미취업 청년
- (재원) '19년 160억(도비)
- (내용) 1회 5만원 총6회(최대 30만원) 지원

□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공약/신규)

- (목적) 청년들의 취업과 휴식을 위한 공간 활용
- (대상) 20~30대 청년층
- (사업내용) 청년들의 취업준비와 휴식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 (재원) '18년 3억(도비) ※ '19년 9억(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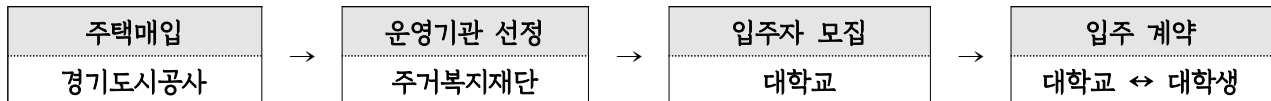
주택정책과

1.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

□ 사업개요

- 개요 : 경기도가 대학교 주변에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대학교 등이 임대운영
 * 추진근거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47조 및 제63조의3(사회적 주택 운영특례)
- 입주대상 :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부모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예시 : 3인 이하 350만원)
- 임대기간 : 2년(최장 6년)
- 임대조건 :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
- 사업비 : 호당 160,000천원 (국비 110,000천원, 도비 20,000천원, 도시공사 30,000천원)

≤ 사업 추진절차 ≥



□ 추진현황

- 2개 대학 40호·실 공급 ('18년 9월 기준)

시군(대상 대학교)	호수	공급시기
안양시(안양대)	16호	2017년
여주시(여주시)	8호(24실)	2018년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17.4.7. 주간정책회의)
- 희망대학 수요조사('17.5.22. 교육협력과)
- 희망대학 대상 사업 설명회 및 신청서 접수('17.11.2 ~)
 * 희망대학 : 아주대, 성결대, 오산대, 동서울대, 동남보건대, 여주대
- 희망대학 추가 수요조사('18.6.5.)
 * 희망대학 : 용인송담대, 평택대, 국제대, 수원여자대
- 대학 주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 매입 지속 추진 (상시)

2.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

□ 사업개요

○ 개요 : 역세권, 대학가 등에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층에게 임대공급

* 추진근거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63조의2

○ 입주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시설 퇴소자 등
-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70%이하)
- ▷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50%이하)

○ 임대기간 : 2년 (최장 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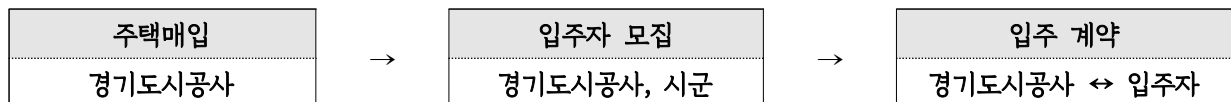
○ 임대조건 : 시세 30% 수준

○ 매입대상 : 전용면적 50㎡ 이하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사 업 비 : 호당 140,000천원 * 전액 국비 추진

≤ 사업 추진절차 ≥



□ 추진현황

○ `18년 최초 신규 사업으로 50호 매입 진행 중

* 용인 17호, 평택 26호, 성남 1호 등 매입 예정(10월 내)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7. 10. : 매입임대사업 수요 제출 요청 (국토교통부→경기도)

○ '17. 11. : 매입임대사업 수요 제출 (경기도→국토교통부)

○ '18. 01. : 사업계획 및 물량승인 통보 (국토교통부→경기도, 경기도시공사)

○ 기존주택 매물조사 및 기존주택 매입 추진 (상시)

창업지원과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현황 및 내용	예산액	비고
1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사업량 : 도내 청년 중 예비 또는 1년 이내 창업자 40명 • 사업내용 : 해외 온라인 판매 교육, 수수료 등 지원으로 국내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양성	600	2018년 일몰 사업
2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사업량 : 도내 거주 또는 소재 대학(원)생 중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 50개팀 • 사업내용 : 대학(원)생의 창업경험 및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등 지원	1,050	
3	스타트업 랩 조성운영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예산 : 2,4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초기 창업(3년 이내) 창업 공간 제공 및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시설구축 계획 : 3개소[디지털&크리에이티브 랩(판교), 소셜 랩(고양), AI 랩(광교)]	2,400	
4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등 운영사업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업대상 : 스타트업캠퍼스 및 판교 TV 입주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 • 사업비 : 판교특별회계로 과학기술과에서 관리 • 사업내용 - 창업교육 : 4차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창업보육 : 시그니처코스 수료생 등 대상 예비/초기 스타트업 보육 - 창업훈련 : 캠퍼스내 편의시설 활용 청년 소상공인 무자본 실전 창업 기회 제공	4,590	

농업정책과

1.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2018년도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 예 산 : 1,609백만원(국비1,087, 도비176, 시군비 346)
-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지원(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추진절차
(농식품부) 지침 및 예산 ⇒ (시군) 접수 및 서류 심사평가 ⇒ (도) 면접평가 및 최종선발 ⇒ (시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추진실적 : 수원시 등 22개시군 207명 선발

2. 창농팜세워

- 사업개요 : 창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실현해보는 모의 창농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경기도민
- 예 산 : 900백만원(도비 900)
- 지원내용 : 농업 현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창농 기회 제공, 선도농가와의 1:1 멘티·멘토 지정으로 농장경영, 마케팅, 시장 분석 등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 학습 지원
- 추진절차
(경기도) 지침 및 예산 ⇒ (교육기관) 교육생 신청·접수 및 선정 ⇒ (교육기관) 교육시설 설치 및 교육과정 운영
- 추진실적 : 한경대 등 3개 교육기관 교육생 50명 선발 및 교육진행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 ◆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유입을 위해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변화와 혁신 유도

□ 주요성과

- 2017년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17명 창업지원 * 점포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 추진 결과 >

- (사업기간) 2017. 3월 ~ 12월
- (지원내용) 임차료 지원, 인테리어, 시설개선, 창업교육, 방송홍보 등
- (주요성과) 성남시 등 6개시 6개 시장 17명 창업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 요 건 >

- 대상지역 :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대상연령 :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성인
- * '18. 12. 31.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 시행주체 : 시·군

- 사업 주요내용 : 전통시장 내 청년몰 2개소 조성 및 청년창업 지원

구분	청년몰*	청년창업
신청기준	· 시장당 점포 10개소 이상 조성 (기존 점포 5개소 이내 포함 가능)	· 창업희망 청년상인 (신규창업, 창업1년 이내인 자)
사 업 비	· 2,000백만원 (도 1,000, 시군 800, 자부담 200)	· 750백만원 (도 375, 시군 375)
사 업 량	· 청년몰 2개소 조성(창업20명 이상)	· 30명 창업지원
지원한도	· 몰당 최대 1,000백만원(2개소)	· 점포당 25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 시장 → 시·군 → 道 (도 1,000, 시군 800, 자부담 200)	· 개인 → 시·군 → 道 (도 375, 시군 375)
추진방법	· 시·군별 사업단 구성	· 시군 집행 * 별도의 기관(상권활성화재단, 대학 등) 위임 가능

* 청년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빈점포 등으로 방치된 500㎡내외의 일정구역을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입점한 점포 10곳 이상, 고객들을 위한 휴게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Mall 형태로 조성한 곳

□ 대상선정(선정위원회 구성)

○ 청년몰 : 적격성 및 사업역량과 사업의 이해도, 시장특성을 평가하여 선정

* 평가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선정 제외

○ 청년창업

- 시·군 신청 시 대상 우선순위 부여 제출 ⇒ 사업성 등 평가심의 선정

□ 사업 추진절차

○ 신청 ⇒ (도)대상 시군 선정 ⇒ 사업준비(세부계획수립, 사업단 구성 등) ⇒ 사업추진

* (청년몰) 시·군별 1개 사업 신청, (청년창업) 시·군별 5명 이내 신청

○ (사업단) 청년몰 사업선정 시·군은 실무경력자, 전문가, 상인회 등이 포함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 단, 간접운영비는 총사업비의 25% 이내 소요

※ 세부사업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조성사업 운영세칙」 준용

○ 청년창업 선정 시·군에서 직접 집행이 어려운 경우 상권활성화재단, 인근대학 등 기관에 집행위임 가능 * 단, 대상자가 4명 이상인 경우

□ 그간의 추진 경과

○ 1차 공모 : 2018. 5. 31. ~ 6. 22. (청년몰 미신청, 청년창업 7명 선정)

○ 2차 공모 : 2018. 7. 24. ~ 8. 22. (청년몰 미신청, 청년창업 미선정)

○ 3차 공모 : 2018. 10. 15. ~ 10. 26.

외교통상과

경기청년⁺⁴ Trade Manager 육성

- ◆ 수출 중소기업과 일자리 취약계층 상호 간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적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3. ~ 12.
- 사업규모 : 150명 (청년·대학생 130명, 다문화인 20명)
- 사업내용 : 무역실무, 마케팅, 외국어 등 무역 전문교육 후 기업 인턴, 취업 알선 및 창업연계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만18~34세),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 (졸업 1년 내 가능), 외국인유학생, 다문화인 *(공통) 일정수준 어학능력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 사업추진현황

(단위 : 명)

구 분	선 발	수 료	성 별		취업현황 ('18. 9.)
			남	여	
계	150	138	45	93	27
청년	74	68	24	44	12
대학생	55	49	20	29	14
외국인유학생	1	1	1	0	1
다문화인	20	20	0	2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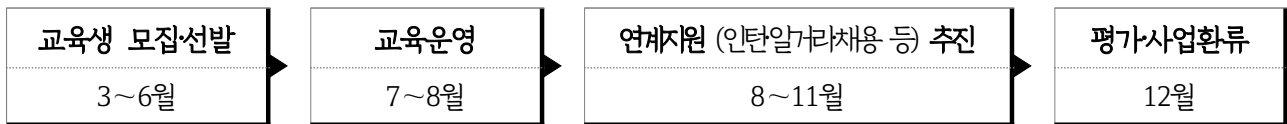
※ 언어별 수료현황 (118) : 영어(89), 중국어(23), 일어(6)

※ 다문화인 국적현황 (20) : 중국(10), 베트남(5), 대만(2), 네팔(2), 일본(1)

《 후원기업*에 대한 특전 》

- ◆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3점)
- ◆ 해당 기업에서 연간 5명 이상 또는 고용인원의 10% 이상 채용 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인증서 교부 등 9개 기관단체 38종 혜택
- * 후원기업 : 교육수료자에 대한 일자리(기업 인턴기회 부여 등) 또는 채용을 지원하는 도내 수출 기업 등

□ 추진절차



□ 세부 추진내용

○ 교육기간

구 분	온라인 사전교육	오프라인 연수	총 시간
청년, 대학생	6~7월 (94h)	7~8월 (평일 09:00~17:00, 225h)	319h
다문화인	5~7월 (44h)	5~8월 (주 1일 09:00~17:00, 87h)	131h

○ 교육내용

구 분	시간	내 용
무역/해외마케팅	126	■ 계약, 결제, 보험, 관세, FTA, 온라인마케팅, 외환금융, 협상전략 등
외국어 교육	99	■ 언어권별 외국어 특강
온라인 교육	94	■ 무역실무 핵심정리, 전시 마케팅, 비즈니스 외국어

- 수료기준 : 출석률 90% 이상, 주간평가 평균성적 점수 60점 이상
- 강의장소 : 동남보건대(수원), 신한대(의정부), 한국무역협회(서울), 다문화센터(수원)
- 주관기관 : 경기일자리재단 * 교육 : 한국무역협회아카데미 / 취업 : 커리어비전

□ 기타 지원내용

- 수료생 전원 도지사 명의 수료증 발급, 성적우수자는 도지사 상장 수여
- 道 주최 해외마케팅 사업(G-FAIR, 수출상담회 등) 참가 기회 제공
- 기업 인턴 및 알거리 매칭, 취업 정보 제공 등 지원
- * 수료식 개최 시 취업박람회 병행 개최 (박람회 참가기업: 24개사, 박람회를 통해 4명 취업)

□ 2017년 추진현황

(취업대상자: '18. 3. 기준)

구 분	수료생 (A)	취업비대상 (B)	취업대상자 (C=A+B)	취업자 (D)	수료생 취업률 (E=D/A)	취업대상 취업률 (F=D/C)
합계	138명	46명	92명	59명	43%	64%
청년	46명	3명*	43명	33명	72%	77%
대학생	82명	36명	46명	23명	28%	44%
외국인유학생	1명	1명*	0명	0명	0%	0%
다문화인	9명	6명**	3명	3명	33%	100%

* 진학, 유학 / ** 육아

[별첨 2]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동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
----------	-----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25일

발 의 자 : 이동현 · 고은정 · 국중현
권락용 · 김강식 · 김동철
김영해 · 김용성 · 김용찬
김우석 · 김은주 · 김태형
김판수 · 남종섭 · 박근철
박성훈 · 박창순 · 박태희
신정현 · 심규순 · 안기권
안혜영 · 양철민 · 오지혜
유광혁 · 이나영 · 이종인
임창열 · 임채철 · 장대석
장태환 · 정윤경 · 지석환
최갑철 · 최세명 · 황대호
의원 (36명)

1. 주 문

가. 국가적 · 사회적 난제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 공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업률과 주거빈민율 등이 증가하고 있는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청년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적·사회적 난제 중의 난제가 되었음. 고학력 졸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실업률은 미결혼 및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장래 내지 존립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임.
-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국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근 2년간(2017~ 2018년) 일자리 재정에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악의 고용쇼크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양적 지표의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 또한 청년들의 주거빈곤율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인 청년(25세~34세) 가구 비중이 20%에 이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결국 이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저소득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고 이마저도 젊은 층은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존재하는지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오늘날의 청년들은 고속 성장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 세대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동과 배움에 매달렸던 것과 달리 일자리의 질,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경험의 추구 및 공유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요즘 청년들의 이러한 인생관 및 가치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높은 실업률, 결혼 기피 현상, 1인 가구 비중 및 주거빈곤율의 증가 등은 상호 독립적이 아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주거 등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당장의 실적을 위한 근시안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정책수혜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요구됨.
- 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일자리(취업·창업), 주거, 복지 등의 분야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1조

참 고 자 료

○ 관계법규 발췌

1. 지방자치법 (제56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1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 ④ 특별위원회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⑤ 특별위원회의 정수는 21명 이내로 한다.
- ⑥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